

혁신을 넘어 가치로, K-VIP :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Value-up

「2026년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글로벌 마케팅 비용 지원(의료기기) 사업
수행기업 모집 2차 공고

국내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디지털 의료기기 포함)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2026년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K-VIP : Korea BioHealth Value-up Innovation Program)」의 글로벌 마케팅 비용 지원 수행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6년 5월 2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붙임 서식

① 사업신청서(양식)

② 바이오헬스산업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운영 지침

1 | 공고 개요

□ 사업 목적

- 세계 각국의 수출입 규제 강화, 공급망 리스크, 통상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여, 국내 의료기기 기업 글로벌 진출 역량의 체계적 지원
- 정부의 '글로벌 5대 바이오 강국 도약' 목표 이행을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
 -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과학적·학술적 근거 기반의 기술마케팅 및 해외 네트워크 확대 활동 지원

□ 사업 구성 및 2차 공고 개요

- 사업명 : 글로벌 마케팅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연간 최대 25백만원
 - * 지원비율 : 기업 규모 따른 차등 지원(총사업비의 50%(대기업), 70%(중견), 75%(중소벤처)
 - ※ 선정 과제 수, 지원규모, 지원기간은 국고보조금 상황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과제 구성요건 : 기업 단독 지원
- 선정 규모 : 국내 의료기기 기업 6개사(예정)
- 지원(사업) 기간 : 협약체결일('26.7월 예정) ~ 27. 01. 31.

2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 참가자격

- 글로벌 진출 또는 수출 확대를 추진 중인 국내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디지털 의료기기 포함) 기업
 - (필수 제출 필요)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 * 공고 마감일 기준 유효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보유 기업
 - 기업 규모 제한 없음

□ 신청제한

- 국세·지방세 체납, 부도, 파산·회생절차 진행, 부정수급 이력 등 결격 사유 해당 기업은 신청 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 신용 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6. 기 지원된 사업과 유사·중복이 확인된 경우
 7.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 및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 등으로 교부 취소를 받은 경우
- ※ 지원 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함

□ 지원규모 및 내용

- 기업별 혁신 기술 및 제품 글로벌 마케팅 및 협력 파트너 탐색에 소요 되는 비용 지원 ※'(참고) 15p 사업 보조비목/세목별 산정기준

- 마케팅 활동 소요 경비(여비, 활동비, 외부위탁용역비 등)를 지원하며, 관련 비용 계상 가능

* 신청기업의 인건비, 자산취득비,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계상 불가능

지원분야	지원내용 및 범위 예시
마케팅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전시회·학회 참가비, 공식 스폰서십 패키지 구매비, 바이어 발굴 및 수출 계약 소요비용, 기업 및 제품 홍보자료 제작, 통·번역비, 임상 및 연구성과 발표 관련 제반 비용 등 * 타기관 및 KHIDI 주관 학회 지원사업(의료기기 글로벌 교육훈련사업 등) 중복 지원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현지 주요 구매 관계자 대상 제품 홍보 활동 및 설명회 개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진 및 병원 등 실수요자 대상 제품 데모 활동, KOL 발굴 행사 개최 비용, 현지 정부 규제·보험·입찰 당국자 대상 설명회 개최 비용 등 ■ 기타 해외 마케팅 활동 수행 시 필요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항목 외에 기업 특성에 따라 필요한 마케팅 활동 계획을 제안 가능하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미선정될 수 있음
현지시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트너·바이어 발굴조사, 해외시장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 조사 및 해외기업 신용·기업실태조사, 잠재 파트너사 탐색 등 ■ 해외진출 전략 수립 시 필요한 글로벌 데이터 구매 비용 (임상, 시장, 보험, RWD, 처방데이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구독형 서비스 이용 시, 구독기간은 전체 사업 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기간 초과하여 구독 시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월할 계상하여야 함 ■ 경제성 평가·위험성 평가 등 해외 보험등재·시장진입을 위한 분석보고서 구매 비용
글로벌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기업 협력(공동·위탁 연구개발), 업무협약(MOU) 체결, 위탁생산 등 활동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활동에 필요한 소요 경비만 계상 가능,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한 직접적인 계약 비용에는 사용할 수 없음 ■ 글로벌 지식재산권, 국내·외 판권 등록, 기술사업화, 기술 가치평가 서비스 비용, 변리사·변호사 자문 비용, 활동 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서비스 이용을 위한 직접적인 계약 비용과 관련 활동에 필요한 소요 경비도 모두 계상 가능

- 총 사업비는 국고보조금+기업부담금(현금)으로 구성함(기업부담금(현금) 매칭 필수)
 - 기업 규모별 기업부담금 매칭 조건 :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30%, 대기업 50%
 - * 기업부담금과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총 사업비 대비 해당 비율 매칭 필요
 - * 예)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기업이 국고보조금 25백만원 신청 시, 기업부담금 약 835만원
총 사업비(100%)=국고보조금(75%)+기업부담금(25%)
- 신청 기업은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기반으로 사업기간 동안 마케팅 활동을 수행해야 함, 사전에 제출된 계획 이외의 활동에 사용된 비용은 불인정 될 수 있음
 - ※ 사전 제출된 계획 이외의 활동 계획 변동사항 발생 시, '변경계획서' 제출해야 함

- 선정 평가 과정에서 사업 계획 적절성에 따라 지원액이 조정 될 수 있음

□ **성과목표 및 결과 활용** ※ 주요성과는 KHIDI 홈페이지에 공개가능

- 최종평가 시 필수 결과물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최종평가 보고서에 지원 사업을 통한 달성 수출액(USD) 제시 or 신(新)시장 판로 개척 건수 제시 必

지원분야	성과목표 증빙자료 예시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시회·학회 참가 확인서, 전시회 참가 및 바이어 발굴 등을 통한 수출 계약 증빙 서류, 계약 성과, 스폰서십 계약서 영수증, 공식 통·번역 기관을 통해 진행한 작업 증빙 서류, 제품 디자인 어워드 출품 확인서 ■ 설명회 및 데모 등 행사 결과보고서, 여비 비용 집행 증빙 등 출장 결과보고서
현지시장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시장조사보고서, 리서치 보고서, 실태조사 보고서 등 ※ 해당 보고서를 통한 수출 기여도 증빙 자료 첨부 ■ 데이터 구매 계약서·인보이스, 데이터 분석 보고서, 해외 보험 등재·시장진입을 위한 결과보고서 등
글로벌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협약(MOU) 체결, 판권 계약 체결, 공동 연구 계약서, 서비스 이용계약서 등 ■ 관련 활동 및 경비 사용 증빙자료 등

- 최종평가 시 목표달성 여부 판단 기준 등으로 활용
- 향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성과조사, 공시 관련 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사업 수행을 통한 제품 수출 계약, 라이선스 아웃, 기술 수출 등 주요 성과 홍보 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 사항 표시

3 | 선정평가 기준

- 본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수행기업 역량의 우수성 40%, 사업 계획의 적절성 50%, 파급효과 10% 비중으로 평가
- 평가 시 항목 변동될 수 있음

<평가 기준(안)>

항목	평가기준	평가 내용
수행기업 역량의 우수성 (40)	수행기업의 우수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행 인력의 전문성 ■ 마케팅사업 추진 의지
	제품·기술의 경쟁력(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 ■ 기술적인 우수성 ■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 등
사업 계획의 적절성 (40)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사업 대상의 적합성 ■ 비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사업 내용의 타당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 사업 추진 전략 및 방법의 타당성
	추진 계획의 적절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 체계의 적절성 ■ 사업 추진 일정의 적절성
	예산의 적정성(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예산 금액 산출의 타당성 ■ 예산 활용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파급효과 (20)	사업 결과의 기대 효과(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종료 후 해외진출 확장 가능성 ■ 사업 수행을 통한 글로벌 사업화 및 수출 기여도
가점 (최대 5점)	인증 기업 또는 기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5) * 보건복지부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제품이 혁신의료기기 지정 제품인 경우(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제품이 보건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경우(3)
	2026년 메드텍 스포츠라이트 : 뉴임팩트 코리아 피칭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4위 수상 기업(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칭 선정 기업(3)
신청 제품 해외 인허가 보유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제품의 수출 희망국(권역)의 인허가를 보유한 경우(3) 	
최근 3년간('23~'25) 의료기기 지원 사업 평가 결과 우수 기업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 맞춤형 비용지원 사업* 또는 '의료기기 글로벌 판로개척' 지원 사업 참여 기업 중 평가 결과 '혁신성과' 또는 '우수' 이력이 있는 기업(5) <p style="font-size: small;">* 상담 혹은 아카데미 참여 기업은 미해당</p>	

※ 가점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불가

4 | 신청방법

□ 공모 및 신청기간

- 2026년 5월 26일(화) ~ 6월 15일(월) 16:00 까지(KST 대한민국 표준시)

□ 신청 방법

- 사업신청서 및 기타 제출서류 일체 이메일 접수
- 세부 사업별 제출 및 문의처

담당자명	문의 및 제출처
단 비 연구원	043) 713-8562 dg0306@khidi.or.kr

- 본 공고의 신청방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사업 참가 신청을 불인정함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제출서류 및 신청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됨
- 가산점 부여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만 가산점 부여(부여대상이라도 증빙 미 제출시 가산점 미 부여)
- 전자파일 제출 후 원본을 우편 제출 요청할 수 있음(필요 시 안내)

✓ 제출 방법 : 이메일 제목 필수 기재 ([신청서 제출] K-VIP_기업명)
신청 서류를 모두 포함하여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취합 제출
모든 서류를 취합한 파일을 hwp, pdf 파일로 각 1부씩 제출

□ 신청서류

연번	제출 서류
1	사업신청 공문(자사 양식, 직인 날인)
2	사업신청서 (붙임 1호 양식 활용)
3	지원서약서 (붙임 1호 양식 활용)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 1호 양식 활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붙임 1호 양식 활용)
6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7	기업분류 증빙서류(중소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중견기업확인서 등)
8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증
9	가점사항 증빙서류 * 신청 제품의 수출 희망국(권역)의 인허가를 보유 증명서 인증 기업 또는 기술(제품) 증명서 등
10	기타 관련 증빙 서류 일체 * 신청 제품의 기술력 및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전년도 수출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5 | 사업 추진 절차

□ 추진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일로부터~6.15
↓		
평가 및 선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평가위원회)	6월 중
↓		
협약체결 및 선금 지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사업수행기업 간 양지협약(온라인) 체결	7월 중
↓		
착수보고 및 사업 수행	사업수행기업	26.7~27.1
↓		
중간 점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9월 중
↓		
사업비(잔금) 지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간점검 이후
↓		
사업종료	사업수행기업	27년 1월 31일
↓		
사업 수행 최종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수행기업	27년 1월 초
↓		
정산 및 후속조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수행기업	27년 2월~4월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 평가 절차 및 방법

□ 평가 절차

공고 및 신청 접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일로부터~6.15
↓		
서류 검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월 중
↓		
서면 또는 (필요시) 발표 평가	전문가 평가위원회 (신청기업에 관한 내용, 사업 내용 및 목표의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서면 평가)	6월 말~7월 초
↓		
선정 결과 통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업	7월 중
↓		
협약 체결 및 보조금 교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사업수행기업	7월 중

※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방법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에 대한 단계별 평가를 거쳐 선정
 - 서류검토 : 신청기업 자격 여부, 제출서류 및 기업부담금 확보 여부 등 형식요건을 사전 확인
 - 서면평가 :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평가하여 계획 및 비용의 적합성·타당성을 검토
 - 발표평가 : 세부사업별로 개별 실시하며, 제출된 사업계획의 부합성과 추진 내용의 적절성에 대해 발표 및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
 - * 평가일정은 개별 통지 예정
- 사업별 적정 수준의 선정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 공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7 | 유의 사항

□ 지원 조건

- (관련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을 따르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및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에 근거하여 진행
-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2회 분할(7:3) 지급하며, 1차분은 협약 체결 후(7월 예정), 2차분은 중간보고 진행 후(9월 예정) 사업비 교부
 - ※ 사업예산은 선정통보일로부터 집행가능(협약 행정 절차 진행 중 사용 금액 소급적용 가능)
 - 예산 비목의 정의 및 사용 범위는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을 준용하며, 보조금 사업 및 지원사업의 특성상 간접비 등은 사업비에 편성·계상할 수 없음
 - * 각 세부사업별 제안요청서를 통해 지원 보조비목·세목별 산정기준 확인 필수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기업부담금) 신청기업 기업규모별 '중소·벤처기업'은 25%, '중견기업' 30%, '대기업' 50%를 기업부담금으로 매칭
 - **총사업비(국고보조금+기업부담금) 대비** 기업규모별 기업부담 차등 매칭
 - * 중소벤처기업 25%지원의 경우
국고보조금 25백만원 지원 시 기업부담금 8.35백만원 매칭
 - * 신청기업은 협약일로부터 1주 이내 기업부담금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입금하고, 기업부담금을 포함한 총사업비를 해당 시스템을 통해 관리해야함
- (사업정산) 본 과제는 정산과제로, 사업종료 즉시 지정 회계법인의 회계 감사를 통해 사업비(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점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 및 최종평가 등 사업 점검 결과 당초 계획과의 불일치, 고의·중과실에 따른 사업 지연 등 사업수행 미흡이 확인될 경우, 사업 중단 및 보조금 조정·환수 조치 할 수 있음

□ 기관별 주요 역할 및 의무사항

○ 관리기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① 선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수행기업의 사업 추진비용을 지원
- ② 수행 기업의 사업 추진에 대한 관리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 KHIDI 해외지사 등을 활용한 중개 지원 가능
- ③ 사업 주요 성과(공개 가능한 자료) 대외 공개 및 홍보 지원

* 주요성과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의료기기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 가능

○ 사업 수행기업

- ① 사업 수행기업은 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시, 사업 기간 내 실현 가능한 계획과 목표를 상세하게 작성

- ② 사업 예산은 사업 계획과 관련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제출 시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정산 보고서 함께 제출

* 회계 정산 비용은 정부 지원금 예산 계획안에 포함하여 집행

- ③ 관리기관이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

- ④ 사업 수행기업은 결과 평가 시 '사업 결과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

- 성과목표를 포함하여 신청분야에서 달성한 성과(계량·비계량)를 필수 제출

- ⑤ 사업 수행기업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사업기간 이후에 시행하는 후속 성과관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함

※ 연도별 성과 : ① 지원 사업 당해 년도 및 차년도의 지원 제품 및 기업의 매출수출 실적 (계약건이 차년도로 진행될 경우 차년도 성과 제출) ② 지원 사업을 통한 유무형적 성과

※ 성과 보고 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성과교류회, 보도자료 등에 활용될 수 있음

※ 성과 보고 시 대외비 자료는 KHIDI와의 협의를 통해 비공개 가능

- ⑥ 사업 수행을 통한 국산 제품 수출 계약, 라이선스 아웃, 기술 수출 등 주요 성과 홍보 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지원을 통한 성과임을 표현

Q1.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준비된 신청서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신 후 접수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dg0306@khidi.or.kr로 제출(hwp, pdf 파일로 각 1부씩)

Q2. 선정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제안서가 접수되면 사업담당자가 서류 누락 여부 및 기업 지원조건 부합 여부 등에 대한 사전 서류검토를 실시하며, 이상이 없는 과제만 선정평가 대상이 됩니다.
- 서면평가(1차)만 진행하거나 발표평가(2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공정성을 위해 모든 선정평가는 외부 심사위원을 포함하여 진행됩니다.
- 최종 지원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를 거쳐 확정 후 협약합니다.

Q3. 타기관에서 지원을 받았던 유사, 혹은 동일한 과제로 지원이 가능한지?

- A. 동일한 품목으로 유사한 사업내용을 수행한 과제의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추후 적발 시 협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4. 기업이 보유한 품목 또는 기술의 가점 부여 기준은?

- A. 지원 신청 품목(기술)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 21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혁신의료기기 지정서를 발급받았거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건 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합니다.
- 따라서 혁신의료기기 지정 품목을 보유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지정 품목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점 항목은 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점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Q5. 대면평가에는 꼭 사업책임자가 참석해야 하나요?

- A. 모든 대면평가(선정평가(2차 발표평가), 중간점검, 최종평가 등)에는 사업책임자의 참석 및 발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기관(KHIDI)에 전달하고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6. 협약 이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 A. 최종 선정 통보일 이후 사용분만 인정하며, 협약일 이전에 사용된 비용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Q7. 인건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 A. 사업비 편성 불가능 합니다.

Q8. 회계검토 수수료를 예산 내에 편성해야 되나요?

- A. 반드시 편성해야 합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니 각 세부사업 규모에 맞게 각각 편성해주세요.
※ 영리기관(주식회사)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수료를 산출내역에 계상
※ 예산 내 편성하지 않을 시, 사업비 외 비용으로 수행기업이 부담

회계법인 검증수수료 기준	
총 사업비 규모 (국고보조금+기업부담금 합계 금액)	표준수수료 (부가가치세 제외)
5천만원 미만	672,000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12,000원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768,000원

Q9. 국고보조금 교부시기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국고보조금은 단계적으로 분할 교부합니다.
협약 체결 후 1차로 70%를 교부하고, 중간점검(9월 예정) 결과에 따라 잔여 30%를 교부합니다.
보조금 교부 시기 및 분할 비율은 사업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Q10. 사업수행을 위한 계좌는 총 2개가 맞나요?

- A. 네, 맞습니다. 계좌는 e나라도움 예탁계좌(국고보조금 교부용 가상계좌)와 기업부담금 계좌의 총 2개입니다.
예탁계좌는 사업 신청 시 기업부담금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Q11. 기업부담금은 꼭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나요?

- A. e나라도움 시스템의 자부담 집행원칙에 따라 자부담을 등록하기 위한 신규 계좌를 만들고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여 자부담 금액 비율만큼 현금을 입금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

사업 보조비목/세목별 산정기준

글로벌 마케팅 비용 지원 (의료기기)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2.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3.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인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4.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5.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6.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자문비)
		7.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8.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9. 통번역료 - 사업수행에 필요한 번역료 및 통역료 (실비) * 편성 시 참고기준 : 한국외대 통번역센터 요율표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통신료 - 우편료 및 우송료 : 사업에 필요한 우편 택배 및 기타 물류 등을 발송하는 비용(실비) - 해외전화사용료 : 해외 출장시 로밍폰 등 사용료(실비)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임차료 (07)	1.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2.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3.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재료비 (11)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일반용역비(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여비 (220)	국내여비(01)	1. 국내 출장 실 소요 경비
	국외여비(02)	1. 국외 출장 실 소요 경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사용 제한: 위 내역 외 인건비, 자산취득비, 간접비(일반관리비, 이윤 등), 사무용품 구매 등 계상 불가능